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31
----------	------

2020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 1.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 추진 필요성: 학원·교습소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연수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연수 실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 라. 민간위탁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

## 바. 예산 규모: 금134,750,000원(금일억삼천사백칠십오만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87,580,000원(금팔천칠백오십팔만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47,170,000원(금사천칠백일십칠만원)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1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동 동의안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연수”는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원 관계 법령에 기반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학원 관련 법령, 공교육 정상화 정책, 고액 사교육 조장 행위 방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연수를 직접 운영함에 있어 연수 인력의 부족, 학원·교습소의 운영이나 강사의 관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수 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나.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제3항에<sup>1)</sup> 따르면 교육감은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sup>2)</sup>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sup>3)</sup>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동의안의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사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강사 관리 등 관련

---

1)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는 교육청 업무 소관의 학원 관련 법령, 지도·감독,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아동학대, 개인정보, 안전관리,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무, 강사 관리 등 학원 및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1]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주요 내용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 관련 법령 안내</li> <li>○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사례</li> <li>○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li> <li>○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li> <li>○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 및 대피유도훈련 관련 내용</li> <li>- 대피요령,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등</li> </ul> </li> <li>○ 개인정보 보호</li> <li>○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li> <li>○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li> <li>○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li> <li>○ 개인정보 보호</li> <li>○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li> <li>○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li> <li>○ (외국인강사) 한국 문화 이해</li> </ul>

- 또한 서울 지역에는 25,056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등 연수대상자가 연간 116,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연수를 운영하기에는 연수 운영 인력 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원 민원행정 업무 공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연수 대상 및 인원**

(단위: 개, 명)

학원 및 교습소 수			연수 대상자			
학원	교습소	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계
14,828	10,228	25,056	14,957	10,301	91,379	116,637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의 59.1%(11,343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대상자가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가 사료됩니다.

**[표3]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현황**

연도	점검 학원(교습소) 수	적발 건수	
		전체	설립·운영자연수 불참
2017	19,366	5,542	2,756 (49.7%)
2018	21,431	5,542	3,228 (58.2%)
2019	22,471	8,121	5,359 (66.0%)
합계	63,268	19,205	11,343 (59.1%)

**라. 민간위탁의 동의 누락에 대한 검토**

- 지난 2017년 3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한 차례 개정되면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청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바 있습니다.<sup>4)</sup>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에 실시된 학원설립·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상반기 4월~6월, 하반기 9월~11월) 및 2020년에 실시된 동 연수(10월~12월)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간위탁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에 실시된 연수의 경우 동 조례 개정시의 경과조치로<sup>5)</sup> 인해 민간위탁 미동의를 납득 가능하다 하겠으나 2020년에 실시된 연수의 경우 고의적인 누락이 의심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7017호, 2019.3.28.>

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학원설립 · 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31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2) 추진 필요성: 학원·교습소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연수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연수 실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

바. 예산 규모: 금134,750,000원(금일억삼천사백칠십오만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87,580,000원(금팔천칠백오십팔만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47,170,000원(금사천칠백일십칠만원)

**3. 참고사항 : 붙임**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관계 법령

## 2020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 연수 운영 개요

- ▷ 연수기간: 2020. 6. ~ 2020. 11.
- ▷ 연수대상: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 ▷ 연수형태: 학원·교습소 단체에 위탁 운영
- ▷ 연수내용: 학원 관계 법령 개정사항, 공교육 정상화 정책, 고액 사교육 조장 행위 방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 ▷ 연수예산: 금134,750천원
  - 학원 단체: 83,440천원, 교습소 단체: 51,310천원

## I 목 적

- 학원 관계 법령에 기반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 및 역할 교육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및 사회교육 담당 자질 향상
-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교육 환경 조성 기여

## II

## 관련 근거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 「학원법」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연수계획)
-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연수의 위탁)

### 2.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 및 제2항

### 3.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1항 및 제2항

### 4. 안전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 「2020년 학원분야 재난대비 대피훈련 추진계획 안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7, 2020. 3. 30.)
-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계획(학원장 연수 등) 안내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90, 2020. 4. 1.)

### Ⅲ 2019년 연수 결과

(단위: 명)

구 분	연 수 결 과						계(%)
	학원설립·운영자		교 습 자		외국인강사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사)한국학원 총연합회	15,150	12,352 (81.5)	10,841	85 (0.8)	3,583	168 (4.7)	12,605 (42.6)
(사)한국교습소 총연합회		115 (0.8)		7,260 (67.0)		-	7,375 (24.9)
계		12,467 (82.3)		7,763 (67.8)		6,269 (4.7)	19,980 (67.5)

### Ⅳ 2020년 연수 운영방향

#### 1. 주요 착안점

- 연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연수 실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교습소 단체에 위탁 연수 실시
- 연수 위치에 따른 집합 용이성을 위해 지역별(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연수 운영
- 내국인강사 및 신규 운영자 대상 연수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와 통합하여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연수 참여 독려 필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위탁 연수 현장에서 연수와 관련 없는 사익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교육지원청별 모니터링 실시 예정
- 연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원·교습소 단체와 지속적 협의

<시·도교육청 회의(2019. 2. 15.) 중 연수 관련 교육부 주요 지적 사항>

- 위탁 연수가 운영자들에게 내실 있는 연수로 운영되기보다 학원·교습소 단체의 ‘조직 확대를 위한 장(場)’으로 활용(연합회 회원 가입·공제사업 홍보 등)
  - 특정업체 홍보 등 연수와 무관한 일정 포함 사례 만연(학원안전공제회)
  - 교재비, 이수증, 비회원 연수비 징구 등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활동 만연
- 연수 예산 집행의 비효율 발생
  - 불참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비용 발생
  - 연수 안내 비용(우편물, 핸드폰 문자발송 등)과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력 소비 등 업무의 비효율성

## 2. 연수 기본방침

- 가. 학원 관련 법령(자치법규 포함)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안내
- 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안내
- 다.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라.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마. 학습자 안전 관리 및 비상대피에 대한 교육
- 바. 기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안내
- 사. 법령 및 정책 관련 내용은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강의
- 아. 연수 현장의 학원·교습소 단체 사익추구행위 금지를 위한 관리·감독

## V 연수 세부 실행계획

### 1. 연수 대상 및 인원

(2020. 3. 기준, 단위: 명)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외국인강사 포함)
14,957	10,301	91,379

※ 연수 시행 시 학원 및 교습소 등록현황 변동으로 대상자 수 변경 가능

## 2. 연수주관 및 예산운용계획

(2020. 3. 기준, 단위: 명, 천원)

대 상	인 원	예산액	주 관	연수시기
학원설립·운영자	14,957	83,440	(사)한국학원총연합회	6 ~ 11월
교습자	10,301	51,310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예정)*	
계	25,258	134,750	외국인강사 수(4,495명)를 고려하여 차등 분배 학원 관계자(19,452명), 교습자(10,301명)	

\* 2020. 4. 28. 현재 위탁연수기관 지정·고시 행정예고 중

## 3. 주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본 청	연수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연수교재 및 발표 기본 자료 제공, 연수과정 모니터링, 민원지도, 연수결과 점검,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정산
교육지원청	연수 대상자 명단 제공, 연수 강사 지원, 연수 과정 모니터링, 민원지도, 일정 안내 및 홍보
학원·교습소 단체	연수계획 시행, 연수 홍보 및 안내, 대상자 점검 및 본청 통보, 연수결과 제출, 각종 행정사항 이행 등

## 4. 주요 연수내용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 관련 법령 안내</li> <li>○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사례</li> <li>○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li> <li>○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li> <li>○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 및 대피유도훈련 관련 내용</li> <li>- 대피요령,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등</li> </ul> </li> <li>○ 개인정보 보호</li> <li>○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li> <li>○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li> <li>○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li> <li>○ 개인정보 보호</li> <li>○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li> <li>○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li> <li>○ (외국인강사) 한국 문화 이해</li> </ul>

## 5. 연수 운영 사항

### 가. 연수교재 구성 및 배포

- 학원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중점 사항으로 구성
- 학원·교습소 단체는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중점 사항을 포함하여 활용
-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이 민원, 희귀 사례 등 첨가

### 나. 연수 일정 홍보 및 참여 안내 협조

- 학원·교습소 단체와 연계된 네트워크 활용
- 관할 교육지원청별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적극 참여 독려
- 학원·교습소 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조하여 연수 일정 및 참석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연수기간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신속한 연수 일정 구성
-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적 안내 진행

### 다. 연수 강의

- 법령 제·개정 사항과 필수 운영사항 위주로 강의
  -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강의내용에 포함
  -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내용 포함
-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7호(2020. 3. 30.), 3190호(2020. 4. 1.)

### 라. 연수 모니터링

- 연수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대처 및 부조리 시정 조치
- 관할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요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관련 내용 포함)

### 마. 연수평가 및 피드백

- 연수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연수내용, 참석률, 만족도 등 연수결과를 향후 연수계획에 반영

6. 예산 교부 및 재배정액: 금134,750천원

(단위: 명)

주 관	대 상	교부(재배정)액	비 고
한국학원 총연합회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83,440	5월 교부 예정
한국교습소 총연합회(예정)	교습자	51,310	
계		134,750	

7. 업무 추진일정

단 계	시 기	담당기관
연수계획 수립	2020. 4.	본청
위탁연수기관별 집행계획서 제출	2020. 5.	학원·교습소 단체
연수대상자 명단 제출 및 일정 안내 공지	2020. 5.	교육지원청
위탁 계약 후 예산 교부	2020. 5.	본청
연수 실시	2020. 6. ~ 11.	학원·교습소 단체
연수결과 제출 및 정산	2020. 12.	본청 학원·교습소 단체

**VI 기대효과**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한 학원 관계 법령 및 주요 정책사항 교육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
- 안전 관련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

## VII

## 행정사항

### 1. 위탁연수기관

- 연수 집행계획서 제출 및 행정 완비
- 일정 구성 및 장소 대여
- 연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본청과 협의

### 2. 교육지원청

- 연수대상자(학원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자) 명단 제출
- 연수 강사 및 현장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복무 지원
-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적극 홍보 및 참석 독려
- 기타 연수 관련 민원 응대. 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